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9월 5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개정이유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(‘22.5.19. 시행)에 맞춰 동법과 유사·중복되는 규정이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서 삭제(’22.6.2. 개정)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서식 삭제
 - (안 제6조 ~ 안 제6조의6, 안 제15조, 안 제19조, 안 별지 제5호서식, 안 별지 제14호서식 ~ 안 별지 제20호서식)
- 나.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명확화 (안 제15조의3, 안 제16조의2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감사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정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120-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140-8049, 팩스 02-330-1565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』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 내용	의 건	비 고